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2.12)으로 '[별표 6의2] 분양 전환공공임대 중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 신설에 따라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안 제2조)

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 1)

다. 특별공급 신청서에 접수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접수시간이 빠른 주택 신청분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안 별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라목**”을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라목**”을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소득없이 휴직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로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명			
	단지명			
	주택형			

위의 기재사항 및 자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복 신청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자격인증 제출서류(별표 2 참조)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사업주체 등은 신청서류 접수 후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다자녀가구 주택**
 []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

주택소유여부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		
미성년 자녀수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금액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월평균 소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가구 총계	원	
	세대주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세대원	원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해당지역 거주여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u>공공주택법 시행규칙</u>」 별표 6 제2호가목 및 <u>라목</u>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u>공공주택법 시행규칙</u>」 별표 6 제2호가목 및 <u>라목</u>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p> <p>2.·3. (생략)</p> <p>제4조(청약자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p>	<p>제1조(목적) ----- ----- ----- 「<u>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u>」----- ----- <u>라목</u>, <u>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u>----- ----- ----- ----- ----- ----- -----</p> <p>1. ----- 「<u>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u>」----- ----- <u>라목</u>, <u>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u>-----</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청약자격) ----- ----- ----- ----- ----- ----- ----- ----- ----- -----</p>

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나. (생략)

2. (생략)

제7조(신청접수)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8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2)

-----.

1. -----

가. -----
----- 2명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청접수) ① -----

-----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
법)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
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
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을 추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
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없이 휴직한 경우 등으
로 인하여 -----

-----.